

여수시도시관리공단 WEB CONTENTS

2024년 05월 08일 00시 29분



목차

목차	2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3
부패방지 방침	3
제1조 (뇌물수수 및 부패금지)	3
제2조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3
제3조 (내부 신고자 보호)	3
제4조 (부패행위 신고)	3
제5조 (부패준수책임자)	3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공단소개 > ESG경영 > 윤리경영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윤리경영현장

청렴 서약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규범준수시스템 (ISO 37301)

소식알림(윤리경영 추진활동)

37001)

사전준비

전사 부패리스크 평가

평가에 대한 내부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경영진의 경영검토 등 보고

전사 결과 공유

리스크 관리 및 경감조치 실시

사후심사 및 재인증

부패방지 방침

제1조(뇌물수수 및 부패금지)

여수도시관리공단의 임직원 및 그 대리인은 누구에게나 뇌물을 제의, 약속,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뇌물을 요청, 수락받을 수 없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의 뇌물 및 부패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제2조(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모든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임직원 행동강령” 및 부패방지경영 시스템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청렴한 공단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3조 (내부 신고자 보호)

공단은 뇌물 관련 신고 내용 및 내부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서 비밀로 유지하며, 내부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4조 (부패행위 신고)

어떤 종류의 부패행위가 공단, 제3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고려되거나 수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며, 아울러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운영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부패준수책임자)

지배구조 및 이사장에게 직접 접근 가능하고, 적절한 권한 및 역량을 지닌 독립적인 부패 준수 준수책임자를 지명하여, 부패방지 성과를 보고를 하도록 한다.

2022. 02. 08.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유화



여수시도시관리공단

WEB CONTENTS